■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지 제11호서식]

구직촉진수당 지급신청서

※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,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.

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자	처리기간 14일

①신청인	성명	주민등록번호(외국인등록번호)
	주소	전화번호(휴대전화)

②신청내용	신청사유	[ ]취업활동계획 수립 완료 [ ]취업지원 프로그램 이행 [ ]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이행			
	지정일 (수당지급 신청일)		구직활동 이행기간 (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)		
	구직활동 이행내용	이행 일자(기간)	취업지원·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이행 내용		증명자료 및 내용
	신청 회차	회차	신청금액	원	

③수당수급 계좌번호	[ ] 일반계좌 [ ] 압류방지계좌(취업이룸통장)					
	예금주		금융기관		계좌번호	
④소득발생 신고	[ ]없음 [ ] 있음 · 소득액: · 소득내용: · 소득발생일(기간):					
⑤취업(예정) 신고	[ ]없음 [ ] 있음 · 취업형태: · 취업(예정)일자: · 1주 소정근로시간: · 회사명:					

「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○○지방고용노동청(지청)장·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

첨부서류 : 수립된 취업활동계획 또는 취업지원·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의 이행 내용(제출할 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)

※ 아래 난은 적지 않습니다.

처 리	[ ]지급			구직촉진수당 지급 내역 : ( )회차, 지급액 : 원					
	[ ]일부 지급·미지급			일부 지급 또는 미지급 사유 :					
결 재	담당		팀장		소장 (과장)		청장 (지청장)		결재 연월일 . . .

210㎜×297㎜[백상지 80g/㎡ 또는 중질지 80g/㎡]

유의사항

1. 「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2조에 따라 수급자가 신청한 경우 구직촉진수당을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입금됩니다. 다만, 정보통신장애나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재해로 구직촉진수당을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입금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계좌로 입금됩니다.

2. 「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3조제1항에 따라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.

작성방법

1. ①신청인란은 신청인에 관한 해당 사항을 적습니다.

2. ②신청내용란의 신청사유란은 해당하는 신청사유에 "√"로 표시를 하고, 구직활동의무 이행을 확인받기로 정한 지정일, 구직활동(취업지원·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) 이행기간, 구직활동 이행내용을 적고, 신청 회차 및 해당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 신청금액 등을 모두 적습니다.

3. ③수당수급계좌번호란은 신청인 본인 명의의 계좌정보를 적습니다.

4. ④소득발생신고란은 해당 지급주기 중에 발생한 근로소득, 사업소득, 재산소득, 이전소득에 관한 내용을 모두 적습니다.

5. ⑤취업(예정)신고란은 해당 지급주기 중 고용형태(근로자 취업, 자영업,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)와 관계없이 취업(예정)한 사실이 있으면 적습니다.

처리절차

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신청인	처리기관 직업안정기관(지방고용노동청)·제주특별자치도
신청서 작성 →	접 수
	↓
	확인·조사
	↓
	구직촉진수당 지급 여부 결정
	↓
← 통 지	전산입력

210㎜×297㎜[백상지 80g/㎡ 또는 중질지 80g/㎡]